

第227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2月28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2.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4.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7.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10.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11. 疑問死眞相糾明에 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12.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계속)
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안(계속)
14. 醫療法中改正法律案(代案)(계속)
15. 藥事法中改正法律案(代案)(계속)
16. 應急醫療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17.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18. 法官등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9. 刑法中改正法律案
20.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된案件

- | | |
|--|----|
|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2. 國政監査및調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4.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7.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 |
|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헌기 의원 발의)(박헌기 의원 외 22인 발의)(계속) ... | 14 |
| 10.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 14 |
| 11. 疑問死眞相糾明에 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의원회안) | 14 |
| 18. 法官등의報酬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발의)(정인봉 의원 외 40인 발의) | 15 |

19. 刑法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발의)(정인봉 의원 외 42인 발의)	15
20.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の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조부영·전용학·박주선·배기선·안동선·조배숙·곽치영·이창복·강운태·김덕규·김희선·이훈평·유재규·정범구·허운나·이희규·이재정·송영진·김화중·원유철·심재권·김경재·김원웅 의원 발의)	15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6
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강두·임진출·김부겸·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현·장영달·이종걸·박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16
14. 醫療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6
15. 藥事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6
16.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김희선·천정배·유재건·김홍신·이근진·이종걸·김경천·신기남·송영길·이재정·이미경·김화중·전갑길·박인상·최영희·장영달·박주선·윤여준·김성순·고진부·박시균·임종석·이원형 의원 발의)(계속)	16
17.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안택수·김동욱·나오연·박종근·서정화·손학규·이상득·이한구·임태희·정의화·최돈웅·홍준표 의원 외 124인 발의)(계속)	16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21

(11시40분 개의)

○**委員長 朴憲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
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소위원회 위
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소속 金民錫
위원 대신에 같은 당 소속 宋永吉 위원을 선임코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國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
장 제출)
2.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정
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3.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4.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
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6.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7. 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
위원장 제출)
8.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
출)

(11시42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중개정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
정 제4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趙舜衡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 말씀하시지요.

○**趙舜衡 委員**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20건의 법
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특위에서 온 8건의 법률안은 25
일에 회부되었는데 오늘 3일이 됩니까?

○**委員長 朴憲基** 오늘 3일이 되기 때문에 상정했
습니다만……

○**首席專門委員 林鍾輝** 초일이 산입되기 때문에
오늘 3일이 됩니다.

○**趙舜衡 委員** 그리고 48시간 전에 전문위원 검
토보고는 모든 위원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林鍾輝** 관례상 타위 법안에 대해
서 48시간을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 委員** 어떻든 지금 만 3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5일 언제 왔습니까? 8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촉박하게 오는
법안에 대해서는 3일 조항을 지키기로 여러 번 다

짐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법안을 오늘 처음 대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委員長 朴憲基 지금 이것이 초일을 산입해서 3일이 되어서 오늘 상정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許泰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8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관계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회법중개정법률안 20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3건,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3건 등 총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상기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각각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고, 의장의 당적이탈 시기는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로 하되,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여성부의 신설에 따라 이를 소관으로 하는 여성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설치하되, 겸임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본회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로부터 법률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최소 1일이 경과한 후에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본회의 법률안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섯째, 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국회가 공포된 법률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제도와 행정입법제출제도의 보완, 표결과 관련한 감표위원제도의 개선 등 의회운영제도의 부분적인 개선·보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전 결산예비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또한 국정감사계획서의 의결 및 증인·참고인의 출석 등과 같은 국정감사 사전준비 내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실시시기를 정기국회 집회기일 다음날이 아닌 9월 10일부터 실시하도록 감사 실시시기를 조정하였고,

둘째,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그 직무대행에 있어서 국회법상의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위를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서류제출에 있어서 종전의 서면에 의한 서류제출 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제도를 개선하였고,

둘째, 국회의 검증실시에 있어서 검증 대상 기관에 대한 검증 실시 통보서의 발부 등 검증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지금의 12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인사청문회의 실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2000년 6월부터 의원들과 각 당에서 제출한 선거 관계 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 관계 법 개정 의견 등을 참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였고,

둘째,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단체와 제2의견국법국민추진위원회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통일하였으며,

다섯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추천에 있어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 당은 50%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을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 및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후보자 등록신청 시 소득세, 재산세 이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 증명서도 제출하도록 추가하였고,

일곱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국회의원선거와 같

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되,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시 읍·면·동별로 1매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째, 선거운동용 소품으로는 어깨띠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열한째,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주소 등을 기재한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였고,

열두째, 현수막 제작비, 전화홍보비, 선거용 홈페이지 관리비를 보전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열셋째,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장 선거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단축하였고,

열넷째, 선거관리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개표 사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지역구 시·도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개 또는 3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있다가 1개 또는 2개로 통합된 경우에는 올해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한해 각 1인을 더 하도록 하였고,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최소 의원정수가 16인 미만인 광역시는 16인, 도는 15인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의원은 현행과 같이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였고,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인접한 읍

·면·동에 우선하여 통합하고,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합하기 전의 읍·면·동의 인구규모가 미달하더라도 그대로 선거구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에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현장에서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열여덟째,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영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당 관계 법입니다.

먼저 정당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30일 박相千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2월 7일 李海鳳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당 내 민주화를 진작하고 고비용 정당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당운영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동의 지구당 연락소는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고,

둘째, 창당집회 개최 시에 일간신문 광고 대상에서 지구당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는 것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간 당원 자격을 정지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구당에 2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선거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 연락소마다 각 1인을 추가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공직선거 여성후보 추천에 있어서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 순서로 매 2인마다 1인을 여성후보로 추천하

고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는 100분의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이를 이행한 정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추천·선출시 당원 및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중앙당은 매년 정책활동계획 및 그 집행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당법 개정에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보조금의 감액지급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2년 2월 25일 제22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으로서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들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

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에 있는 현행 제12조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라는 표현을 넣고서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은 선정(選定) 부의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내용이고, 제2항은 법정(法定) 부의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항과 제2항은 직무대리에 있어서 각각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제2항 중에서 “제1항의 경우”의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에 있는 안 제20조의2는 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는 하나 정당법에서는 ‘당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당원 등의 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제6조 및 제18조 등)의 표현에 맞추어 보면 안 제20조제2항의 조문을 정리하는 경우 아래의 대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현행 국회법 제33조제3항에서도 ‘당적’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율함으로써 검증에 관한 절차 규정의 미비로 인한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검증의 의결을 하더라도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검증의 방해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검증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검증절차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12조제2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검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증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증 거부(국가기관이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專門委員 金致元 이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 및 31쪽입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는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시·도의원 2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인만을 줄이도록 하였는바, 안 부칙에서는 이 조항을 이 법 개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 의원선거 한 차례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적용 규정은 일종의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에 맞게 법문을 수정·보완함과 더불어 이를 안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7쪽~40쪽입니다.

안 제49조제10항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49조제10항에 의하면 후보자가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검찰청의 장에게 전과를 조

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기간은 17일에 불과하고 전과 확인 및 송부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로서는 해명 기회를 박탈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과기록조회업무를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이 후보자 등록 전에 미리 범죄 경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찰에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 시에는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전과 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87쪽~89쪽입니다.

안 제218조의2~제218조의4는 장기거주외국인의 선거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하여 일각에서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참정권 내지 선거권은 천부적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고 국민주권주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 부여 기준의 설정 및 선거권 자격 확인방법 등 수많은 실제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고 외국과의 관계 고려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시점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의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의 논란에서부터 선거관리업무의 실무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있으므로 동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안 제30조의2제1항은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규정하면서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추가하여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시·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당연락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에 설치한 것이므로 중복 설명된 부분을 삭제하여 “구·시·군의 당연락소에 각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부칙 제3조는 보조금의 계상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안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2003년도 예산부터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예산에 대한 계상은 함께 회부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 제1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 부칙에 규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법중개정법률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계상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안 제17조의2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칙에 시행일의 단서로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리하였으며, 기타 약간의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안 제101조의2제1항제3호는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공소제기된 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도 확정판결 시까지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1심에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洪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洪春 委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중 열여덟 번째 외국인 중 영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다 외국인의 인권을 위해서 근로, 복지, 의료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처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마는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 등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 재일동포들 수십만 명이 해방 후 50년 동안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24조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서 헌법상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참정권을 허용할 수도 있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부수의견도 있어서 일부 일본 현에서 개별적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즉각 이것이 위헌이라고 말하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주자격을 주는 것이 금년에 처음 생깁니다. 그동안에는 체류자격만 있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고쳐서 상당한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주도록 금년에 시행령 개정작업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마자 영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바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이것을 주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사 위헌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 채택되는 영주자격 부여 후에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에게 선거권을 준다는지 해서 이렇게 일단 영주권을 얻고 상당 기간 우리 주민으로서 역할을 했을 적에 선거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고 수정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때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지방선거권도 광역도지사나 도의회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권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기초지방선거의 선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세금을 낸다는지 적절한 주민으로서의 역할인 권리·의무를 다 했을 때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권을 갖는 것이 적당하지 처음부터 광역

단체선거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외국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일본인이 여기에 와서 몇 년 살고서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우리는 선거권을 다 주고 재일동포들은 지금 50만~60만이 오랫동안 투쟁을 해도 못 받고 있는데 이래도 되겠느냐, 이런 국제관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동포들에게 같은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이 이런 영주권을 얻었을 적에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본 위원은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하나씩 답변하시지요.

許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洪春 위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정치특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유독 대외적인 면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 세계화의 시대적 추세나 월드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있고 또 우리 재외교포들의 법적 지위향상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선거권을 주자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5년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이 1만 7000명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99%가 화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특위에서 심의가 되어서 법안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金洪春 委員 영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에게 주면 그동안에 준비도 되고 또 영주권자들의 숫자라든지 동향을 보고 선관위가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년에 시행하면서 곧 내일부터 준다는 것은 좀 조급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 점에 대해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행자부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咸承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咸承熙 委員 저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존경하는 金洪春 위원께서 지금 제시한 의견이 일단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점만 지적하자면, 지금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권익문제에서 지방참정권이 숙원사업인데 재외동포 보호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용이하게 길을 터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먼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좀더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과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경력에 있는 사람이 지방의회든 국회든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조회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 선거기간이 17일, 2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기초의원까지 하면 후보자가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 수만 명을 17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검찰청에 전과조회를 하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능할 뿐만 아니라 지체됨으로써 결국은 투표일 한 2, 3일 전에 그것이 온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기본적으로 전과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선관위가 검찰청에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도 법의 취지는 100%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것이 더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경찰서장’으로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는 형태로 하면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 개입한 것이 아니면서도 법의 실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委員長 朴憲基** 許 의원님, 그 점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특위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그것은 선거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관위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선관위 측 의견은 어떻게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이 지난번 선거 때 보면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찰에 조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실효된 범죄까지 조회하다 보니까 과거의 정부기록보존문서까지 전부 다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아니,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그것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容鈞 委員** 역시 공직선거법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인민위원회와 비슷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매우 그 시행을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선거법에서 인정해 가지고 법적 기구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를 선거법에 명시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것은 순리적인 수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 부여 문제는, 우리나라가 원래 외교를 잘못해서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외교력이 약합니다. 대원군 때 개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항해 버리고 관세 받는 절차나 비자 발급하는 절차, 입국심사하는 절차를 못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방을 하고 세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갑자기 부여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에게 국가공무원 자격을 주겠다는 똥판지같은 법안을 가져와서 이것은 국가 공권력의 문제, 국정의 문제, 또 출입국 관리의 문제 등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은 기한을 정해서 하도록 제한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선거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구·시·군 정도의 운영에 관한 지식 이외에 광역단체까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초단체 정도로 그것도 완전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두어서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풀어서 광역단체까지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속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선거법의 가장 독소조항이 선거

법 제25조제1항입니다. 이 제25조제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인구가 모자라더라도 구·시·군의 일부를 떼어서 줄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똥판지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구에서 인구가 100명이 모자란다고 할 때 옆의 조그만 면이나 리를 하나 떼어 주면 완벽한 선거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개 군을 떼어 와서 붙여 주어야 될 이런 황당한 선거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상한선이 35만인데 35만 1000명이 되었을 때 인구 1000명만 떼어내 버리면 되는데 쓸데없이 선거구 2개를 만들어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 원흉이 선거법 제25조입니다.

선거법 제25조는 구·시·군의 일부를 떼어서 다른 구에 붙일 수 없다는 것인데, 구·시·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단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구·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 기능상의 구역에 불과한 것이고 그 행정 기능을 수행하다가 이쪽의 국회의원 선거구의 숫자가 모자랄 때는 1개 면이나 1개 동을 떼어서 붙여 주고 또 여기에서 너무 인구가 많아졌을 때는 다른 데로 떼어 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을 국가운영상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선거법 제25조에 대한 손질이 없이 선거법을 바꾸는 것은, 그 제도의 완급에 대한 특위의 견해가 너무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金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법에 정식으로 근거가 없는데 왜 선거법에 이것을 넣었느냐,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의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선거법에 넣어 놓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법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의 제25조 문제는 이번에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당면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만 한정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시·군

의 일부를 떼어서 인접 선거구와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차기 선거법 심사 때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趙舜衡 委員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참정권의 핵심은 물론 선거권·피선거권입니다. 이러한 선거권·피선거권의 주체인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대한 해석이고 또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법체계상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입법사항이라기보다는 헌법 개정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헌법원리에 대한 변경, 수정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러한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이들 나라에서도 5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지방선거권을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국제화가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일동포 참정권이 자꾸 이 문제와 연결되어서 거론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재일동포는 일제 제국주의 강점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서 정착한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재일동포의 참정권과 우리나라에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정 기간 체류했다고 해서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것을 결부시킨다면 우리가 일본 사회에서의 재일동포 차별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상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관행상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5년 정도 취업한다든가 어쨌든가 해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교들에 대한 각종 차별대우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장기체류 외국인의 법적 지위문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영주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아주 팽배하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 심사에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 委員 주요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해서, 현재 자치구인 경우는 특별시나 광역시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고 지방의 시와 군에서도 읍·면이 있고 작은 시에 또 동이 있는데, 제23조에 보면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 면에 한해서만 1000 미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그렇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런데 읍은 2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 2만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면은 1000 미만이 가능하고 시·군의 읍인 경우하고 작은 시의 동도 6000이 넘어야 됩니까? 처음에 정개특위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시·군의 1000 미만인 면은 그대로 두고 자치구에만 5000을 6000으로 올린다 이것인데, 내가 옛그제도 許 의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한 바 있지만 그러면 읍의 경우에도 6000 미만일 경우는 인근하고 합해야 됩

니까? 읍은 6000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의 경우 지금까지 6000이 안 된 5000 기준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방은 그렇게 조정되어 있고, 그러면 시의 동 개념에서 6000 미만이면 인근하고 다 통합해야 됩니까?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입법조문은 그렇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정개특위에서 제기된 문제하고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姜在涉 의원님도 그 문제를 제기하시던데 지금 3만 이상의 읍하고 아까 5만 이상의 동을 이야기 했는데 일시적으로 읍으로 처리가 안 되고 면 상태로 있으면서 3만 이상인 경우 이야기 아십니까?

○崔鉛熙 委員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동이 10개로 시의원이 10명인데 4개 동이 6000 미만이에요. 그러면 인근하고 통폐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렇지요. 6000 미만은 통폐합하도록 정개위에서 결정했습니다.

○崔鉛熙 委員 아마 우리 지역구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현상이 많을 텐데 실제로 전국의 통계를 내 보았습니까?

내가 그저께 전화할 때도 기존의 읍·면·동, 동이라는 것이 자치구의 동이 아니고 지방 시의 동일 경우 읍·면·동을 하나로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지요? 그것이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내가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요.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제가 바쁜 상황에 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 방침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5000명 미만의 동도 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0명 미만의 면이 새로 통폐합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1000명이 새로 추가됐으니까 동도 5000명에서 1000명을 추가한 6000명으로 인상하자 이렇게……

○崔鉛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변경되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주세요.

○委員長 朴憲基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趙舜衡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오후 2시에 정개특위의 법안을 모두 통과해야 되겠다 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金洪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법원판례가 꼭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은 지방자치권의 하나로 보아서 아마 일본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책결정의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金容鈞 위원님께서 선거법 제25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과제로 하고 오늘 당장 여기에서 심사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거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金洪春 委員 전체회의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헌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문제는 헌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주권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무엇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 기초자치단체에 참정하는 정도는……

○委員長 朴憲基 그것이 주민자치권이라는……

○金洪春 委員 그런 일본의 것도 있어서 위헌 문제는 앞으로 현재에서 논의가 되면 몰라도 당장 저는 위헌이라고는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광역자치선거에까지 확장할 것이 아니라 헌법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위에서 양해하신다면 기초지방선거의 선거권으로 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의회 또는 시장·군수선거에서만 하고 도의원·도지사·서울특별시시장 선거에는 참여를 못 하게 기초지방선거로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좀더 헌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5년도 좋고 7년도 좋고 10년도 좋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5년이 경과한 자에게 기초선거권을 주는 정도로 하면 장차 위헌 문제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제한을 특위에서 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존경하는 金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4대 선거를 동시에 가서 기표를 합니다. 또 이번에는 1인2표 정당명부

제까지 도입되어서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가서 다섯 개를 기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만 떼어서 하면 투표상에 상당한 혼선이 오지 않을까……

○金洪春 委員 절차상 선관위에서 문제가 많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특정공직에만 선거권을 준다고 해서 관리상 번잡은 하겠지만 못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선거관리상 좀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못할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책결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위헌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당장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아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것 같습니다.

○趙舜衡 委員 이 문제는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으니까 이것은 한번 재검토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金洪春 위원께서 합리적인 대안도 내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의 문제고 헌법의 기본원리를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委員長 朴憲基 이 법안은 오늘 통과가 안 돼도 3월 임시국회가 있고 하니까, 선거관리 차원에서 어떻습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선관위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선거개시가 90일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3월 국회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金容鈞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매우 시급하고 빨리 확정을 지어 주어야 지방선거가 준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어떤 권리능력을 창설한다든지 행위능력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법사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권리능력, 행위능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권리능력이 있느냐 어떤 행위능력이 있느냐 하는 기초적인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정책이 있는 것이지 그 권리능력이 창설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외국인에게 국내 투표권을 주겠다는 똥판지같은 정책

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국적 문제라든지 출입국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에서 외국인에게 어느 범위 내에서 투표권을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법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이 부분을 일단 삭제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기초의원회에 한해서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해서 규정을 축소시키거나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회는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1항의 마지막에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3만 이상의 면’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습니다. 파주군 교하면과 조리면이 3만 이상의 면이면서 읍으로 승격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읍으로 승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백기간에 그 면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읍·면과 5만 이상의 동은”이라고 자구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방금 말씀하신 23조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하시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容鈞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파주군 교하면과 조리면이 읍이 되기 전 상태로 지금 과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부로 읍으로 승격되는 것으로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추가해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아까 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같은 데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여할 기회도 많고 지방의 국제화, 세계화 이미지 고양 차원에서 피선거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역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올리겠습니다.

○**趙舜衡 委員** 차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재외동포가 선거권 행사를 못하지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동포가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趙舜衡 委員** 글썄, 외국에서 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지금 현재 미국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다민족국가……

○**趙舜衡 委員** 지난번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법률의 원래 정부 원안에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선거권도 부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에 대해서 5년 있다고 해서 참정권을 부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했겠어요?

○**委員長 朴憲基** 지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외에는 문제가 없지요?

여기 제안설명 7쪽을 보시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인2표제를 도입했는데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이렇게 합니까? 정당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정당투표제로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정당투표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예.

○**委員長 朴憲基**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지요?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 任左淳** 선거는 그렇게 하되 투표는 정당에 하는 것으로 투표조항에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다른 법안을 심사하고 난 다음에 좀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洪春 委員** 그 조항이 논란이 많으니까 그 조항만 빼고 나머지만 통과시키면 안 됩니까?

○**委員長 朴憲基**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중개

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정당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許 의원님 가지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관해서 한번 정개특위 위원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다른 법안 심사하고 나서 바로 이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헌기 의원 발의)(박헌기 의원 외 22인 발의)(계속)

10.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1. 疑問死真相糾明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위원회안)

(12시52분)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신 威承熙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威承熙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威承熙 위원입니다.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의

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해당부처 관계관 등을 배석시킨 가운데 동 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체토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중심으로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제2호에서 도주차량운전자가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벌금형 도입의 필요성 및 벌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도입하는 것은 도주차량에 대하여 엄벌하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경우에 탄력적인 형벌부과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이므로 개정안대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사항과 관련하여,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일선에서의 수사·재판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적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시행시기를 2개월 연기하고, 벌칙에 관하여는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의신탁자와 3년 이상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제안된 이 법안은 부과기준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가액·위반기간·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법리를 잘 살리면서 과징금제도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안된 이 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昌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 등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그 개정이 시급한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및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83건의 사건들 중 15건만이 종결처리된 상태임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되, 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02년 10월 16일이고 모든 조사를 마친 후 1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의 임기 1월 전인 2002년 9월 16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처리가 종결된 의문사 사건 15건의 처리유형은 취하 1건, 인정 2건, 기각 12건이며, 12건의 기각사건들 중 일부는 조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문사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가 따르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하고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3월 9일까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사건이 6건이 있으나 이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조사가 종료되는 동 사건들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부칙에 이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성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宋錫贊 의원님, 오늘 이 항을 상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오래도록 기다리셨으니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宋錫贊 議員 예.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가시도록 하시지요.

○宋錫贊 議員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각각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발의)(정인봉 의원 외 40인 발의)

19. 刑法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발의)(정인봉 의원 외 42인 발의)

20.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조부영·전용학·박주선·배기선·안동선·조배숙·곽치영·이창복·강운태·김덕규·김희선·이훈평·유재규·정범구·허운나·이희규·이재정·송영진·김화중·원유철·심재권·김경재·김원웅 의원 발의)

(13시01분)

○委員長 朴憲基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

관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했습니다.

1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계속)

1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이강두·임진출·김부겸·이정일·박혁규·서정화·이부영·신현태·이성현·장영달·이종걸·박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14. 醫療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5. 藥事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6. 應急醫療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김태홍·김희선·천정배·유재건·김홍신·이근진·이종걸·김경천·신기남·송영길·이재정·이미경·김화중·전갑길·박인상·최영희·장영달·박주선·윤여준·김성순·고진부·박시균·임종석·이원형 의원 발의)(계속)

17.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안택수·김동욱·나오연·박종근·서정화·손학규·이상득·이한구·임태희·정의화·최돈웅·홍준표 의원 외 124인 발의)(계속)

(13시04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2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金容鈞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容鈞**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金容鈞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일부 내용 및 체계와 관련하여 관련 행정부처인 법무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제기된 다른 의견과 문제점 중 체계와 자구에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9호에서는 ‘계속거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거래의 유형이 전기통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유형과 일부 중복될 수 있고 그 결과 이중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적용제외)에 제4항을 신설하여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비자의 동의 없는 정보전송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안 제55조제3호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송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제1항제9호 각목에서는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인 본인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방문판매자 등과 소비자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방문판매자 등이 계약 이행에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4조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또는 교원은 그 신분의 특성상 상품을 강매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들을 등록결격자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는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부과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예외적 허용행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대금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범위를 10만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2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소비자 피해 분쟁의 조정을 직권으로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당사자 아닌 자가 사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보아 이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소비자 피해 분쟁의 당사자가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권고안 등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47조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 방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그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조를 훈시규정으로 두어 존치시키되, 다만 동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 역시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49조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조사에 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으로 영치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하게 되므로 영치의 방법·장소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원안은 그 처벌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의 법정형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벌칙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거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모든 개인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의 기록 및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정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거래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복규제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안 제10조에서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10조제1항제8호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상당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 각목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9호와 같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10조제1항제9호에서 수정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2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42조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42조에서 수정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49조제2항과 마찬가지로 조사권에 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서 추구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치의 방법·장소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5조에 의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럴 경우 경제적 사정이 나쁜 노인 등에 대하여 선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3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의사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허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허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유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라는 헌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동호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약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개념이 문제되었는바 의료법 규정 문구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응급의료기금 출연예산의 법정화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책적 사항임을 존중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4항 및 제4조의3제3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등에서 이 법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다시 이 법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체계상의 문제와 법령 소관 위배의 문제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금융정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등이 이 법에서 새로이 정한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관련 특례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새로운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의 특례규정에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 간의 저촉문제가 남아 있고 따라서 개정법률을 개정하여 법령 소관 위배 및

저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培淑 위원 질의하십시오.

○**趙培淑 委員** 趙培淑 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3조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고, 이 법 제23조에 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단계에 의한 것보다는 전자상거래인 인터넷쇼핑몰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는 사람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잘못되었다 할 때는 사람을 찾아 가지고 호소도 하고 조치할 수 있지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인적인 교류가 전혀 없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단계의 경우는 물건을 바로 보고 사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는 전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사기 때문에 물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안에는 전자지급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단서규정을 두었는데, 만약 그런 규정을 두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지급결제를 안 하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어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또 폐쇄한 후에 대표가 잠적할 경우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해 보고 피해가 발생하면 하겠다, 이것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습니까?

○**小委員長 金容鈞**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은 소위 피라미드 조직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

당한 고액의 대규모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규제를 한 것 같고, 전자상거래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보험계약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피라미드 판매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강력히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안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보험을 강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순수한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는 상거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체계 자구나 형평성의 문제로 조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렇게 방문판매와 전자상거래를 달리한 이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시지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시다마는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고객과 관련해서 수많은 분쟁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많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보험가입마크제 도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살 때에 물건에 보험가입마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 정도로 조문을 해 주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소위원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 위원님,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培淑 委員** 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하고 형평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지적을 드렸고, 지금 TV 홈쇼핑 업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저는 소위 심사에 참여한 입장에서 심사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는 심사과정에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법령 소관사항의 위배 문제가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바로잡을 것

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다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 고유의 권한과 임무는 법 체계 심사입니다. 이런 사안을 상정해서 법 체계 심사를 하는 것이 법사위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금융실명제법에서 비록 특별한 경우에 계좌추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례규정을 감사원법, 공정거래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법과 이 법들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특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일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법률 적용상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서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법령 소관사항 위배로서 감사원법은 법사위,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은 행자위원회,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법률에 대해서 개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 의결이 되었다는 이것이 소관사항 위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고, 또 하나는 사후통보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보대상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다 포함되는데 재정부 소관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하는 자료, 국정조사 요구자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자료,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세무자료 등을 제외한 것은 크게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보고, 이것은 오히려 금융실명제법을 집행하는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자기들 소관만 전부 제외하는, 아주 극도의 부처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마는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좌추적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이 계좌추적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할 수 있는가 유효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고 지금이라도 여러 위원들께서 이 주장을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특별히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趙舜衡 委員** 예, 아닙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공식적인 일정 관계로 바쁘신 모양인데 차관하고 교대를 하시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趙舜衡 委員**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공정거래위원회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이 세 가지 법안이 의원입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내용이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입법인데 어떻게 된 것이, 법무부라든가 정통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거의 한 4개 부처하고 사전에 의견조정이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까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니고 여러 항목에 걸쳐서 타 법률과의 상충, 충돌 또는 중복규제라든가 전부 이렇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왜 이렇게 됩니까? 사전에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국회에 제출이되어야지, 우리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률의 법 체계 심사를 하는데 지금 이 방문판매법 등 세 가지 법 때문에 1개 부처도 아니고 3, 4개 부처가 다 나와서 그 의견을 조정하고 이것 심사하느라고 회기 말에 크게 지장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경우도 가만히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내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또 몇 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주하고 독선을 부린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趙舜衡 委員** 그리고 왜 정부입법으로 안 하고 의원들한테 주어서 입법을 하게 합니까?

정부입법이면 당연히 부처협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관회의라든가 거기에서 어떻게든 결론이 나 가지고 오는데 여기 국회에 와서 그것도 주무 위원회도 아니고 법사위원회에 와서 모든 부처가 자기 밥그릇 주장하고 따지고 온통 그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니까? 공정하게 해야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술선수범해서야

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咸承熙 委員 아까 2소위에서 다루어졌던 것인데 자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제53조제1항제7호에 복지부의 재량에 의해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법관이 아닌 행정관료에게 ‘허위’라는 개념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권을 줌으로써 지나치게 권리침해적 소지가 많다 해서 문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모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허위’라는 개념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이렇게 실시했는데 전문위원이 다시 고쳐 온 것을 보면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렇게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언뜻 보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지만 문제제기를 도로 문제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한다는 개념 속의 관련서류에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보험금 지급청구서라는 서류에 어떤 환자 A에 대한 이중청구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관련서류 허위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위청구가 어떤 착오에 의해서라든가 이전에 또 崔鉛熙 위원님이 제시하신 보험수가의 변동내용에 대한 법의 부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말하자면 고의가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선별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관련서류’는 아마 보험금 지급청구서가 아닌 여타서류를 허위작성하는 것을 염두에 둔 모양인데 이렇게 두면 도로 그 서류에 대한 허위작성도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보장시키는 여타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허위작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 관련서류 개념 속에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서라는 그 서류의 허위작성을 포함시켜 버리면 문제가 다시 문제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委員長 朴憲基 咸 위원이 말씀하신 뜻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들이 모두 어쨌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허위의 진료비 청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에 관한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趙舜衡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표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양보를 하시지요.

○趙舜衡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각각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憲基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代案)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계속)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위원장님, 질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 委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보면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이 동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을 말하는데, “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인구 5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인구 1000 미만의 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동의 경우에 6000 미만의 동은 통폐합하도록 되어 있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예.

○**崔鉛熙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동’은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동과 지방 벽촌에 있는 시의 동과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예.

○**崔鉛熙 委員** 지방에 있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동의 인구가 6000 미만일 때는 통폐합하라고 했는데, 특별시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준을 지방의 동 기준과 같은 차원에서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에 반하는 규정이 아니냐…… 아까 답변하시기를 종전에도 그래 왔으니까 새로이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동과 지방의 작은 시의 동을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상 형평에 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 문제는 이번에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역을 조정할 때 인구라든지 행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봅니다. 지금 주로 인구 차원에서 말씀이 계시는 것 같고 시의 동 단위 기준의 과소 동 문제인데, 지난번에 면을 1000명 미만으로 하고 동은 지금 5000을 넘어서 6000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규모 면에서 행정은 광역이나 아니냐의 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인구를 중심으로 볼 때는 대도시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인구에 의한 하나의 동일성을 가지고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鉛熙 委員**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의 인구수와 지방에 있는 시 단위의 동 중에 인구가 제일 적은 동의 인구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서울에 낮에만 근무를 하는 소공동 1·3·5·6동이 1356명으로 인구가 적어서 기이 통합했고 을지로 3·4·5가 동도 187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했습니다. 명동도 밤에는 전부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한 3520명을 기이 통합했고 필동도 한 5500명, 회현동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울도 지역에 따라서 강남과 강북, 도심지, 이런 데 차이 등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崔鉛熙 委員** 이번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데 앞으로는 자치구의 동 개념과 지방에 있는 시의 동하고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에 1000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시에 있는 면과 인근의 시에 있는 동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너무 확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형평에 맞게 해 줘야지요. 지방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중앙과 기준을 같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알겠습니다. 항시 그것이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崔炳國 委員**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崔鉛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구 1000명 미만, 6000명 미만으로 기준을 세워놨는데 인구를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또 인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면 인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완성되면 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약사동의 경우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59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31일 현재 불과 한 달 사이에 7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약 1200명이 더 늘어난 것이고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지 작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을 앞의 동과 합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공평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아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인구의 기준은 최근의 인구통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가 되어서 확인작업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적어도 3월 초 조례를 개정할 때 2월 말 수준까지 최근의 통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그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2월 말이라든가 그런 정도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예,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가능한 시점으로 하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구역 통폐합할 때에 동을 5000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렇게 한 것은 법에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침입니까? 그것이 됩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委員長 朴憲基 공직선거법 말고, 동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예.

○委員長 朴憲基 그것이 한 4년 이상 되었는데 그때 동을 통폐합하면서 인구 5000을 기준으로 해서 5000이 안 되는 곳은 5000이 되도록 몇 개 동을 모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것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행정편의로 했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습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최근 것은 아마 98년, 97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도·농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도 가급적이면 경영 규모에 맞도록 규모화 있게 권고하고 통합했는데 그때는 지침으로 하면서 그 숫자에 맞게 안 된 것은 통합하고 한 결과가 시·군의회에서 조례로 결론이 나타난 것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번에는 선거구를 통합하는 데 불과하지 동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예.

○委員長 朴憲基 원칙으로는 하자면 동도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러니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작은 동의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적정 규모의 동으로 전부 통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알겠습니다.

○行政自治部次官 丁榮植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합이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문제가 되었던 외국인의 선거권 문제에 관해서 특위에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과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 합의로 정개특에서 통과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 한 결과, 지금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촉박한 시점에 있고 또 논란이 많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를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委員長 朴憲基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하도록 하지요.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예.

○委員長 朴憲基 그리고 한 가지 제23조제1항 단서에 도서지역인 읍·면·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0 미만이나 또는 6000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대성동은 도서지역이나 낙도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 해서 파주군 내 면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습니까?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 “도서지역인 면·동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을 때에 저희들이 법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잘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것이 착오로 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도 하나의 정책 판단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법사위에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까?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틀림없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낙도지역과 다름없고 착오로 빠진 것이라는 얘기지요?

○政治改革特別委員長代理 許泰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의 부여 문제에 대해 위헌성의 논란에서부터 선거관리 업무의 실질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제안설명서】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議員 鄭寅鳳

존경하는 박헌기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종로의 鄭寅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법관의 조기 대량 이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사직 현상의 주된 원인은 법관에 대한 미흡한 처우, 업무과중 등과 아울러 현행 법관직급제도에 따른 선별승진이 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법관들은 임용된 순서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순차 승진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에 있어서만 선별방식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여야 할 법관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을 앞두고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등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법원과 법관의 독립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중견법관들이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승진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보장된 임기나 정년과 무관하게 조기에 사직하는 현상은 엄연한 현실로서, 이는 헌법상 규정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사실상 위배하는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행 법관직급제도는 사실상·정서상 계급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봉을 단일화하여 법관에 대한 보수, 기타 처우를 직급이 아닌 근무연수에 따라 달리하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호봉제는 고법부장과 지법부장 사이에 있어서의 처우의 편차를 완화 내지 해소함으로써 승진 탈락 내지 승진 탈락에 대한 우려로 인한 사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의 신분을 보다 확고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관의 보수체계를 근무연수에 따른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도록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刑法中改正法律案

國會議員 鄭寅鳳

존경하는 박헌기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종로의 鄭寅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 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강도미수 또는 준강도에 의한 상해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죄는 미수에 그쳤다 하여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강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절도피의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상해죄는 절도, 강도 행위와 관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광범위하게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강도의 고의가 전혀 없는 절도피의자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강도미수피의자에게도 강도상해죄와 동일한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이를 재판부에서 작량감경하여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에만 가능하므로 강도상해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살인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형벌의 적정화와 재량판단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현재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중 하한을 5년 이상으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國會議員 宋錫贊

존경하는 박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 12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2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사실상 위헌판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같은 한민족이면서 법적으로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 왔던 255만 재중동포와 옛 소련 거주 동포 등이 재외동포로 인정받든가 아니면 최소한 동포 간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해 재외동포를 인정하는 국적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해방 전 일제의 핍박이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나 시베리아로 이주하였던 동포들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같은 동포이면서도 한쪽은 재외동포로 고국의 수혜를 받고 다른 한쪽은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으로 비판받으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킨 재외동포법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입법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민의 비판여론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 간 형평성의 결여를 보완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동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2조의 재외동포 정의 규정에서 재외동포를 동조 제2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3호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외동포의 범위를 확대하면 그동안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아 온 재중동포와 옛 소련동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중동포들에 대해 출입국 문호를 제한함으로써 빚어졌던 불법체류, 송출비리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본안은 그동안 재외동포차별법으로 더욱 알려진 재외동포법 중 재외동포에 대한 비합리적인 정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동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12人)

金 淇 春	金 容 鈞	朴 憲 基	宋 永 吉
尹 景 湜	李 柱 榮	張 在 植	趙 培 淑
趙 舜 衡	崔 炳 國	崔 鉛 熙	咸 承 熙

○請暇委員(3人)

金 民 錫	金 學 元	千 正 培
-------	-------	-------

○委員아닌出席議員(2人)

宋 錫 贊	許 泰 烈
-------	-------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林 鍾 輝
전 문 위 원	金 鍾 斗
전 문 위 원	金 致 元

○行政府參席者

재정경제부	
차 관	尹 鎭 植

기획관리실장	裴	英	植
세제실장	崔	庚	洙
금융정책국장	邊	陽	浩
법무부			
장관	宋	正	鎬
행정자치부			
차관	丁	榮	植
보건복지부			
장관	李	泰	馥
차관	李	京	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任	左	淳
정당국장	金	炫	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李	南	基
사무처장	趙	學	國
기획관리관	李	炳	周
경쟁국장	姜	大	衡
소비자보호국장	安	熙	元

○其他參席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文	德	炯